

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

2014. 5. 15. 제정

2020. 9. 11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센터는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원생 연구지원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9.11.)
2. 대학원생 심리상담, 기숙사 및 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육 및 연구 기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, 센터장은 대학원 부원장이 겸직한다. (개정 2014.10.27.)

② 센터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행정인력) 센터에 행정인력(T.A.)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대학원장, 교무처장, 연구처장, 센터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사업계획 및 예산서) 센터장은 센터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 후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사업보고 및 결산서) 센터장은 센터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·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세칙 및 규정의 준용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부 칙(2014. 5. 15. 제정)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0. 27. 개정)

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11. 개정)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